

의안번호	제 494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4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

## 2. 주요내용

-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조문이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면서 명칭을 각각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주택조례” 를 “충청북도 주택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을 “제2장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로, “주택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종합계획” 을 “주거종합계획”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아목,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나.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 아.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 자. 「주거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종합계획” 을 “주거종합계획”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나.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 다.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제2조의2** 중 “법 제43조의3” 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시행령 제48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49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50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3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를 “제3장 주거정책심의회”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주거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 주거종합계

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주택” 을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주택종합계획” 을 “주거종합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요 주택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를 “도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중 “법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를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로, “법 제42조의16제1항” 을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충청북도 주택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장 <u>주택종합계획의 수립</u></p> <p>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u>주택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u>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10년 단위의 <u>주택종합계획</u></p> <p>가. <u>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u></p> <p>나. <u>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u></p> <p>다. <u>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u></p> <p>라. <u>주거수준의 목표</u></p> <p>마. <u>제2호 각 목의 사항(제2호나목</u></p>	<p>(제명) <u>충청북도 주택 조례</u></p> <p>제1조(목적) -----「<u>주거기본법</u>」 및 같은 법 시행령, 「<u>주택법</u>」 및 같은 법 시행령, 「<u>공동주택관리법</u>」 및 같은 법 시행령 --.</p> <p>제2장 <u>주거종합계획의 수립</u></p> <p>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u>주거기본법</u>」 제6조에 따라 ----- -----<u>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u>----- -----.</p> <p>1. 10년 단위의 <u>주거종합계획</u></p> <p>가. <u>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u></p> <p>나. <u>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u></p> <p>다. <u>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u></p> <p>라. <u>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마. <u>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u></p>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신 설>

<신 설>

<신 설>

사. (생 략)

## 2.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 가.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나.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다.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

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 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아.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자. 「주거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차. (현행과 같음)

##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다.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계획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  
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지원) 도지사는 법 제43조  
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3(지원대상 선정)① 제2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을 제외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  
다.

② (생략)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삭 제>

제2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지원) ---- 「공동주택관리  
법」 제34조-----  
-----  
-----.

제2조의3(지원대상 선정)① ----  
-----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2조-----  
-----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3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설치)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1.~2. (생략)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명 이내

제5조(기능) (생략)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주택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주거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  
-----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주거종합계획-----  
-----.

2.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도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치는 사항

중요한 정책으로서 -----  
-----.

<신 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  
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  
대주택 의무공급비율) 법 제38조  
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주  
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  
축할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전 미리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 제42조의16  
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  
하는 비율” 이라함은 100분의 60  
을 말한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  
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  
-----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  
-----.

## 관련법령 발췌

### □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

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법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들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

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주택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 해당없음

2. 사유

-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3. 주요내용

-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조문이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면서 명칭을 각각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조정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13조)

4. 검토자 :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장 연병철